

6. 建築法施行令改正(案)

立法豫告 1990.5.4 公告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건축이 금지되어 있으나, 시장·군수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곳에 한하여 연면적 합계 2천5백제곱미터까지 허용함.

나.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준공지역내에서 공해공장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이상 띄어 건축하던 것을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완화하였음.

라. 다세대주택의 규모인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이하를 삭제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2. 의견제출

이 영(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